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51
----------	-------

발의연월일 : 2025. 8. 4.

발 의 자 : 전용기 · 김문수 · 박해철
남인순 · 황운하 · 정준호
민병덕 · 허 영 · 송옥주
문금주 · 박 정 · 전진숙
이용선 · 안도걸 · 정을호
박지원 · 박홍배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란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처럼 체포 ·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음. 이에 관례는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을 통해 구속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여전히 실무와 학설에서의 혼란이 이어지는 실정임.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과 달리, 독일은 법원뿐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고(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a 제1항 제1문, 동법 제163조의a 제3항, 제133조 제2항, 제134조 제2항), 일본 역시 체포·구류된 피의자의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 중에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 역시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와 그를 위반한 경우의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생략) <u><신 설></u>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제200조 제1항----- ----- ----- ----- ----- ----- ----- -----

者を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が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正當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 ----- ----- ----- ----- -----제200조제1항-----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